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 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

2022년 3월

서론

1.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11월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를 받았다. 당시 심의에는 95개국 이 우리나라에 대한 UPR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권고는 총 218개로 정리되었다.
2. 심의 이후 2018년 1월, 우리 정부는 권고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권고 수용여부 등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후 우리 정부는 관련 권고 이행을 담당해야 하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121개 권고에 대한 수용의견, 97개 권고에 대한 참조의견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유엔에 제출하였다. 정부의 최종입장은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 채택되었다.

시민사회 의견

3. 정부는 중간보고서 초안을 시민사회 단체에 보낸 후 이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회신 받는 형식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였다. 제2차 UPR 중간보고서 작성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COVID-19로 인하여 시민사회 단체 및 관계기관의 대면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4. 시민사회는 의견서를 통하여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와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항의 폐지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5. 시민사회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제1차, 제2차 UPR 및 다른 조약기구 심의에서도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아직도 “전환치료”가 행해지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행경과

6. 아래 표에서 제3차 심의 후 권고에 대한 이행경과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권고내용	권고 수용여부	심의 후 권고 이행상황 (2018~2021년)	소관부처
130.1.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ILO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우즈베키스탄)	수용	정부는 2021년 4월 ILO 핵심협약 3개(제29호, 제87호, 제98호) 비준을 완료하였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제105호 협약 비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130.2.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에 관한 ILO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 (스페인)	수용	권고 130.1. 참고	고용노동부
130.3.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등 ILO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 (스웨덴)	수용	권고 130.1. 참고	고용노동부
130.4.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ILO 4개 핵심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 (니카라과)	수용	권고 130.1. 참고	고용노동부
130.5.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4개 핵심협약의 비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법과 행정절차의 검토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 (우간다)	수용	권고 130.1. 참고	고용노동부
130.6. 주요 지역인권규범 및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 위하여 국내법 개정을 고려할 것 (필리핀)	수용	정부는 그간 참여하지 않았던 국제인권협약에 조속히 가입 및 비준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현재 비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관련 내용은 권고 132.12.와 132.21.을 참고할 수 있다. 또 정부는 ILO 핵심협약 3개(제29호, 제87호, 제98호)를 비준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권고 130.1.과 132.20.을 참고할 수 있다. 강제실종협약은 현재 협약 가입과 국내 이행입법을 함께 추진 중이고 관련 내용은 권고 132.1.을 참고할 수 있다.	법무부 외교부

130.7. OHCHR 서울 사무소의 업무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 (일본)	수용	정부는 OHCHR 서울 사무소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OHCHR 서울 사무소와의 협력 하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지원하였다. (제3주기 UPR 보고서 채택 이후 4회 방한 : '18.7월, '19.1월, '19.6월, '22.2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은 대면 협의·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나, 가능한 비대면 협력 및 OHCHR 서울 사무소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외교부
130.8. 인권이사회 및 인권 메커니즘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 (미얀마)	수용	권고 130.9. 참고	외교부
130.9. 유엔 및 인권 메커니즘에 기여하는 좋은 선례를 계속하여 만들어갈 것 (부탄)	수용	유엔 인권이사국(2016~2018년 임기, 2020~2022년 임기)으로서 인권이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 및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주도해왔다. 또한,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난민 등 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OHCHR 대상 재정기여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인권기구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OHCHR에 대한 재정기여를 지속함으로써 유엔 및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기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p>130.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에 있어 투명성과 참여적인 절차를 보장하고, 인권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인권위가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 (과테말라)</p>	<p>수용</p>	<p><인권위원 선출 시 투명성 등 보장관련></p> <p>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4항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인권위원 선출·지명 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인권위원 임기만료 등에 관한 정보 공지 및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인권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인권위 홈페이지에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시민사회단체에 이메일 발송 등 인권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2016년 이후 폭넓게, 지속적으로 공고하고 있다.(부록 1 참조)</p> <p>대통령 지명 인권위원의 경우 2018년부터 대통령비서실에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추천위에서 3명 내외 복수로 후보 추천을 하면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회는 2017년부터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일부 정당은 후보추천위에서 후보 추천 등 방법으로 후보를 지명한 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인권위원을 선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6년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후보 추천 공고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인권법센터 등 시민단체에도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있다.</p> <p>한편,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인권위는 2020년 12월 대통령 특별보고 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보고했으며,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각 선출·지명기관 소속으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추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회에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p>	<p>국가인권위원회</p>
--	-----------	--	----------------

<인권위원 독립성 보장 관련>

인권위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의 면제를 받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의2), 인권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 신분보장(「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등을 통해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자원 확보 보장을 위한 입법조치 관련>

인권위가 예산 요구 및 배정을 받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와 같지만,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 충분히 고려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인권위는 2020년 12월 대통령 특별보고 시 예산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으며,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위의 지위를 명시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현재 법률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p>130.11. 파리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인권위원장의 선출에 있어 시민사회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협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몰도바공화국)</p>	<p>수용</p>	<p><파리원칙에 입각한 인권위 위상 강화 관련></p> <p>인권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립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인권위의 조직·신설·운영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인권위는 2020년 12월 대통령 특별보고 시 조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권위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인권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변화하는 인권환경에 신속히 조직 구성을 조정하는 등 인권위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p> <p><인권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시민단체 등 참여 관련></p> <p>인권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민단체 참여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 자격요건으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제3항제4호). 대통령비서실은 2018년부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을 대통령이 지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인데, 시민단체 대표 3명(43%)을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7명) 위원으로 포함·운영함으로써,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2021년 6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9명)에는 시민단체 대표 4명(44%)이 참여하였다.</p>	<p>국가인권위원회</p>
<p>130.12.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완전한 참여를 바탕으로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 추진을 가속화할 것 (인도네시아)</p>	<p>수용</p>	<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수립·시행의 근거규정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제3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등을 포함하여 공청회,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인권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NAP 수립 과정에서 분야별 총 18차례의 정책 간담회, 공청회 및 관계부처 수시협의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제3차 NAP는 2018년 7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하고 2018년 8월 국무회의 보고 후 공표되었다.</p>	<p>법무부</p>

130.13.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연장선상으로서의 제3차 NAP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것 (에티오피아)	수용	권고 130.12. 참고	법무부
130.14.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3차 NAP의 신속한 이행절차를 추진할 것 (조지아)	수용	권고 130.12. 참고	법무부
130.15. 인권 증진·보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 (사우디 아라비아)	수용	정부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추진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적·종합적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정책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정책 기본법안을 마련해 2021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
130.16. 정치적, 사법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법적 기틀을 개혁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미얀마)	수용	권고 130.15. 참고	법무부
130.17. 젠더 주류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할 것 (인도)	수용	<p><젠더 주류화 관련 조치></p> <p>「양성평등기본법」은 2014년 5월 28일 전부개정될 때부터 젠더 주류화를 위한 여러 조항을 두었고 그 후 여러 차례 법개정을 통해 젠더 주류화를 강화하였다. 이 법은 제21조제2항(정책결정과정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합의제기관)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제5조제7항)를 비롯하여 많은 법과 조례, 조직 규범에서 명시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현재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의 평균 비율은 40%를 초과하고 있다.</p> <p>여성가족부는 2021년 2월 ‘성인지 예·결산 협회의’ 내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성주류화 제도가 실질적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5월 19일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제3항을 신설, ‘양성평등 임금의 날’ 지정 및 관련 통계 공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p>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p><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p> <p>정부는 대상 사업장에 대해 남녀 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 등을 매년 제출토록 하여 자율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2018년에는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을 대상 사업장에 포함시켰고, 2019년에는 전체 지방공사·공단 및 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을 대상 사업장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전체 공공기관 및 전체 지방공사·공단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를 시행하고 있다. ('18년 42개소→'19년 50개소→'20년 51개소→'21년 30개소)</p> <p>2019년 1월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사업장 제출자료에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임금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성별 임금차별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시행하고 있다.</p> <p>※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 <OECD.stat> '15년 37.2%→ '16년 36.7%→ '17년 34.6%→ '18년 34.1%→ '19년 32.5%</p> <p>※ 여성관리자 비율 <2021년 AA분석 결과> '06년 10.22%→ '17년 20.39%→ '18년 20.56%→ '19년 19.76%→ '20년 20.92%→ '21년 21.30%</p> <p>여성가족부는 2018년도에 성평등 임금 실천 안내 책자를, 2019년과 2020년에는 관련 교육콘텐츠를 제작·배포하였고, 2020년 9월에는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p>	
130.18.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나미비아)	수용 정부는 여성차별 금지 보장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하여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18~'22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여성가족부

<p>130.19. 여성차별 금지 보장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 (라오스)</p>	<p>수용</p>	<p>정부는 2019년부터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을 운영하여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였다.</p> <p>* '19년 18개 팀 → '20년 23개 팀 → '21년 21개팀이 일, 교육, 주거 등 성평등 프로젝트 추진</p> <p>또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 등 미디어 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언론·미디어 종사자, 공무원 등 대상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p> <p>* 대중매체 성차별 사례 심의요청 건수 : '17년 119건 → '18년 268건 → '19년 323건 → '20년 579건</p> <p>* 성평등 미디어 교육 대상을 '17년 방심위 모니터단에서 '18년 청소년, '20년 방송·언론인 등으로 확대</p>	<p>여성가족부</p>
<p>130.20.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 (세르비아)</p>	<p>수용</p>	<p>권고 130.19. 참고</p>	<p>여성가족부</p>
<p>130.21. 성평등 달성 및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정안을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 (싱가포르)</p>	<p>수용</p>	<p>권고 130.19. 참고</p>	<p>여성가족부</p>
<p>130.22.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HIV/AIDS 검사 의무화 조항을 다양한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차별적 조치를 중단할 것 (인도)</p>	<p>수용</p>	<p>2017년 7월 3일 법무부고시를 개정하여 채용신체검사서에서 HIV 검사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회화지도(E-2) 강사를 포함한 예술·홍행(E-6), 선원취업(E-10), 기술연수(D-3) 자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HIV 검사를 전면 폐지하였다.</p>	<p>법무부</p>

<p>130.23. 여성, 아동, 소외 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 조치를 취할 것 (네팔)</p>	<p>수용</p>	<p>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2018년 3월부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관련 대책 수립 및 점검을 통해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p> <p>특히,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종합적·체계적 접근을 위해 2018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2020년 2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년)을 수립하고,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20.5월, '21.3월)을 마련·추진 중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p> <p>또한 정부는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17.11월~), 아동수당 확대('18.9월~), 기초·장애인연금 인상('18.9월~), 노인 일자리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준비('20년~) 등 빈곤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치매국가책임제('17.9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등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p>	<p>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p>
<p>130.24. 여성 및 기타 소외 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속적 조치를 취할 것 (잠비아)</p>	<p>수용</p>	<p>권고 130.23. 참고</p>	<p>여성가족부</p>

<p>130.25.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차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화합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에티오피아)</p>	<p>수용</p>	<p>정부는 인종 차별이나 외국인 혐오 방지를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p> <p>※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p> <p>※ '21. 5. 20.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p> <p>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년) 정책과제로 외국인 혐오 방지 및 인종 차별금지 등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다.</p>	<p>법무부</p>
<p>130.26.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이집트)</p>	<p>수용</p>	<p>정부는 2018년 8월 각 부처의 인권 분야 정책을 총망라하는 제3차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NAP)('18-'22년)을 수립하면서, 기업과 인권 분야를 다루는 별도의 장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을 새롭게 도입, 기업과 인권 관련 정책과제들을 담았다. 새로 도입된 장에서는 중심과제인 '인권경영 제도화'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서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 확보'를 설정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대한민국 영토 또는 관할권 내의 모든 기업은, 그 규모나 활동 장소에 상관없이,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 정의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할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p>	<p>법무부</p>

<p>130.27. 관련 협약기구들이 지적한 바에 따라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노력을 증대할 것 (일본)</p>	<p>수용</p>	<p><성폭력 방지>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성폭력피해의 상담, 보호, 법률구조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및 피해자 등의 보호·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p> <p><가정폭력 방지> 정부는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보호, 의료·법률 지원,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p> <p>2020년도에는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원 인력 증원(43명), 직업훈련비 지원 등 취업지원 시범사업 추진(2개 지역), 임대주택 지원('19년 335호 ⇒ '20년 6월 345호) 확대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 및 주거 안전을 강화하였다.</p> <p>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긴급전화1366 및 가정폭력 근절 동참 캠페인 영상 등을 제작, 케이블TV 영상 송출 및 유튜브, 버스 및 지하철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p> <p>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p> <p>2020년 10월에는 가정폭력범죄 확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다.('21.1월 시행)</p>	<p>여성가족부 법무부</p>
<p>130.28. 가정폭력 방지,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조사 및 기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강화를 위한 조치를 계속하여 이행할 것 (몰디브)</p>	<p>수용</p>	<p>권고 130.27. 참고</p>	<p>여성가족부 법무부</p>

130.29.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튀니지)	수용	권고 130.27. 참고	여성가족부 법무부
130.30. 젠더기반 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도입하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시에라리온)	수용	<p>정부는 2020년 10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범죄 정의 확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p> <p>기존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해 왔으나,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종합적·체계적 접근을 위해 2018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2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년)을 수립하고,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20.5월, ’21.3월)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p>	여성가족부 법무부
130.31.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보장하는 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 (잠비아)	수용	<p>정부는 2020년 10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범죄 정의 확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p> <p>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보호, 의료·법률 지원,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p> <p>2020년도에는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원 인력 증원(43명), 직업훈련비 지원 등 취업지원 시범사업 추진(2개 지역), 임대주택 지원(‘19년 335호 ⇒ ’20년 6월 345호) 확대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 및 주거 안전을 강화하였다.</p>	여성가족부 법무부

130.32. 국민 인식제고 등을 포함하여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스리랑카)	수용	2018년 11월 27일 수립한 가정폭력 방지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를 독려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였다.	여성가족부
130.33. 젠더기반 폭력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터키)	수용	권고 130.30. 참고	여성가족부
130.34. 「양성평등기본법」의 이행을 통하여 가정폭력 근절 노력을 지속할 것 (아제르바이젠)	수용	권고 130.27. 참고	여성가족부
130.35. 젠더 폭력, 특히 가정폭력과 부부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도입을 고려할 것 (칠레)	수용	권고 130.30. 참고	여성가족부 법무부
130.36. 부부간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할 것 (온두라스)	수용	현행 「형법」(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처벌법」(제3조~제15조) 및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부부간 성폭력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
130.37.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모범 사례 및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를 공유할 것 (스리랑카)	수용	정부는 지뢰사고로 양쪽 눈이 실명되고 양쪽 전완부가 절단된 피해자에 대하여 향후치료비와 보호비, 이미 지출한 치료비 등을 지원한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뢰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 외 정서적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방법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국방부
130.38.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을 배가할 것 (그리스)	수용	권고 130.41 참고	경찰청

<p>130.39.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실제적 조치를 이행할 것 (브라질)</p>	<p>수용</p>	<p>정부는 관련 법률상 집회 금지·제한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집회와 시위 및 이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집회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집회 신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시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집회를 통한 자유로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검찰은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행동에 대하여만 처벌하고 있다.</p>	<p>경찰청 법무부</p>
<p>130.40.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히 인권옹호자의 이니셔티브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국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권옹호자의 활동을 보호할 것 (이탈리아)</p>	<p>수용</p>	<p>2020년 6월 10일 집회시위 자유 등 헌법상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 이수를 제도화(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10조)하여 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노력을 배가하였다.</p> <p>2020년 6월부터 기본권 침해 우려가 높은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 활동 전반을 인권 관점에서 평가하는 집회시위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서울, 부산, 경기남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이 집회시위 현장 상황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집회관리 정책 및 기조를 수정·보완하는 제도이다.</p>	<p>경찰청 법무부</p>

<p>130.41. 평화적 시위에 관한 이전 UPR 권고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일본)</p>	<p>수용</p>	<p>2017년 11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집회·시위 참가자와의 대화·소통을 통해 평화적 집회·시위가 개최되도록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형 대화 경찰제도’를 2018년 10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p> <p>이와 같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은 각종 통계와 여론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집회·시위의 증가에도 집회현장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경찰관 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시위 횟수: ‘18년 68,315회 → ‘19년 95,266회 → ‘20년 77,453회 → ‘21년 86,552회 ▶ 경찰부상자 수: ‘18년 84명 → ‘19년 76명 → ‘20년 31명 → ‘21년 40명 ▶ (집회현장 불법행위 감소) 집시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인원 ‘16년 3,425명 → ‘17년 1,276명 → ‘18년 488명 → ‘19년 1,220명 → ‘20년 1,060명 → ‘21년 1,211명 등 감소 추세 ▶ (대국민 여론조사) ‘집회시위가 평화적’이라는 답변이 ‘16년 52% → ‘17년 73.9% → ‘18년 74.8% → ‘19년 84.8%로 상승 추세 </div>	<p>경찰청</p>
<p>130.42.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고, 사회활동가, 인권대표자, 노동조합 대표들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베네수엘라)</p>	<p>수용</p>	<p>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사회활동가, 인권대표자, 노동조합 대표들에 대한 국가권력의 탄압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시정하며 해당 공무원 등을 형사 처벌하고 징계하는 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 중이다. 정부는 위와 같은 국가권력의 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정착되어 있는 상기 절차들을 통해 꾸준히 감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다.</p>	<p>법무부</p>
<p>130.43. 인권옹호자에 대한 폭력, 협박, 괴롭힘, 감시를 내용으로 하는 고발 및 진정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할 것 (에콰도르)</p>	<p>수용</p>	<p>권고 130.42 참고</p>	<p>법무부</p>

<p>130.44. 인신매매 근절 및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것 (영국)</p>	<p>수용</p>	<p>범부처 인신매매방지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및 관계부처 간 협력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공포 '21.4.20., 시행 '23.1.1)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조율을 거쳐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부처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인신매매방지정책을 수립·추진해나갈 계획이다.</p>	<p>여성가족부</p>
<p>130.45. 「형법」의 효과적 집행을 보장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는 등 여성 및 아동 대상 인신매매와 성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 (태국)</p>	<p>수용</p>	<p><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및 보호 제공> 인신매매와 성 착취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 법률적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상담 및 소송), 심리적 지원(범죄피해트라우마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을 지속할 예정이고, 2020년 스마일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 16개 스마일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포 '21.4.20, 시행 '23.1.1)이 제정되어 인신매매범죄 피해자에게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p> <p><여성 및 아동 대상 인신매매와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 확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포 '21.4.20, 시행 '23.1.1)이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활용, 전담기관 설치·운영을 통한 피해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인신매매사례판정, 식별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생계지원 등 잠재적 피해자 식별·보호·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동 법률은 세부정책 설계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p> <p>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20.5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상향('20.6월) 및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21.3월),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도입('21.3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다.</p>	<p>법무부 여성가족부</p>

130.46.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콜롬비아)	수용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 관련 개념 및 범죄군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식별·보호·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제고 홍보 등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공포 '21.4.20, 시행 '23.1.1) 동 법률은 세부정책 설계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130.47.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에 관한 효과적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러시아)	수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포 '21.4.20, 시행 '23.1.1)이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활용, 전담기관 설치·운영을 통한 피해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인신매매사례판정, 식별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생계지원 등 잠재적 피해자 식별·보호·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동 법률은 세부정책 설계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130.48. 한부모 가구 지원법을 개정 및 이행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특히 미혼모의 경우 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 (아이티)	수용	<p><한부모가족지원 관련></p> <p>2020년 10월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을 강화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21년 1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p> <p><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p> <p>권고 130.17. 참고</p>	여성가족부
130.49.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이행을 강화할 것 (노르웨이)	수용	권고 130.48. 참고	여성가족부

130.50. 청년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노력을 제고할 것 (카타르)	수용	사회 각 분야 여성리더와 청년여성이 함께 진로를 탐색하고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청년여성 멘토링을 추진하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및 육성지원으로 사회적 경제영역에서의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기관인 '새일센터'를 확충하였다.('18년 157개 → '21년 159개) 더불어 임신, 출산, 돌봄 등의 사유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1월에는 「경력단절여성법」을 개정하여 '경력단절예방정책'을 강화하였다.	여성가족부
130.51.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페루)	수용	정부는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매진해왔다. 이에 2020년 12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을 완료하였고, 2021년 4월에는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강제노동금지 관련 제29호 협약) 비준서 기탁을 완료하였다. 취약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며, 2019년 7월부터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 관행개선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고용노동부
130.52.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이스라엘)	수용	정부는 정규직 채용원칙 확산 및 불합리한 차별해소 노력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였다. -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 ▲정규직 전환 지원요건 완화(고용장려금 고시 개정, '19.1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기간 연장(~'21년) ▲고용형태공시제도 확대(소속 외 근로자 숫자 및 주요 업무 공시) - (공정 질서 마련)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의 차별진단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 컨설팅 - (지도·감독) 비정규직 근로감독 추진('12년~)	고용노동부
130.53.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벨라루스)	수용	권고 130.52. 참고	고용노동부

<p>130.54.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돕는 노력을 지속할 것 (세르비아)</p>	<p>수용</p>	<p>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21년 5월부터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법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의무자 없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486명 대상)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 촉진 등 자립생활 지원하기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을 2017년 6월부터 지속 시행 중이다.</p> <p>2021년 12월 2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이 폐지되어 향후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22.12.22. 시행)</p>	<p>보건복지부</p>
<p>130.55. 노인들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나이들고,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관련 입법, 정책, 사업을 검토 및 개편할 것 (싱가포르)</p>	<p>수용</p>	<p>2020년 1월 이후 정부는 노령인구 지원을 위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34개소로 늘려 노인보호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또한 노인학대예방 홍보 및 노인인권교육을 실시, 2020년 약 5만명이 이수하였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편을 통해 독거노인 돌봄을 강화하였다(’20년 차세대 장비 10만대 보급).</p>	<p>보건복지부</p>
<p>130.56. 노인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 (베트남)</p>	<p>수용</p>	<p>권고 130.55. 참고 및 130.57. 참고</p>	<p>보건복지부</p>
<p>130.57. 노인 빈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알제리)</p>	<p>수용</p>	<p>정부는 2021년 1월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수급인원 전체인 소득하위 70%로 확대*하였다.</p> <p>* ‘19년 소득하위 20% → ‘20년 40% → ‘21년 70%</p> <p>노인 일자리 수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사업량 양적 확대 대응을 위하여 기존 인프라 외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협동조합) 및 기타 비영리조직도 진입 가능토록 발굴하고 수행기관화 교육*** 지원을 통해 수행기관 다변화 및 확대를 추진 중이다.</p> <p>** ‘18년 51만개 → ‘19년 64만개 → ‘20년 74만개 → ‘21년 82만개</p> <p>*** ‘21년 37개 사회적협동조합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교육 실시</p>	<p>보건복지부</p>

130.58. 노인들의 필요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종합 계획의 수립을 고려할 것 (이스라엘)	수용	정부는 2020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34개소로 늘려 노인보호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또한 같은 해 노인학대예방 홍보 및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약 5만명이 이수하였다.	보건복지부
130.59. 사회보장체계와 노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것 (중국)	수용	권고 130.58. 참고	보건복지부
130.60.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소득을 보장해 주는 훌륭한 노력을 지속할 것 (브루나이)	수용	정부는 2021년 1월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수급인원 전체인 소득하위 70%로 확대하였다. * '19년 소득하위 20% → '20년 40% → '21년 70%	보건복지부
130.61.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연금 제도와 같은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부탄)	수용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2017년 월 최대 20만원에서 2021년 1월까지 30만원으로 인상·지급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였다. * 30만원 지급대상자: 276천명('21.12월)	보건복지부
130.62.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급여를 책정할 때 충분한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대표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 (아이티)	수용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급여 수준을 조정하고, 추가로 매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급여의 적정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130.63. 취약 계층의 의료 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할 것 (앙골라)	수용	정부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써 '의료급여제도'를 운영 중이며, 취약 계층을 위하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 중이다. 아울러, 2020년 7월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기본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수급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고,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값의 50% 이하인 가정의 아동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조제도로써 교육급여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급여 수혜자에게는 수업료 등을 포함하여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0년 8월에 교육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항목으로 나눠서 지원하던 교육급여 지원항목을 통합하여, 교육급여 수혜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편리하게 개편하였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p>130.64.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브루나이)</p>	<p>수용</p>	<p>대한민국은 2005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고교 진학률 99.7%로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어있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없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교육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의무교육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였다.</p> <p>* '19년 2학기 3학년→ '20년 2,3학년 → '21년~ 전학년</p>	<p>교육부</p>
<p>130.65. 인권교육 및 인권인식 제고를 추진할 것 (아르메니아)</p>	<p>수용</p>	<p>인권위는 인권인식 제고 및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2017~2018년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을 비롯해 17개 광역시도 교육감과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협오표현 대응 공동선언' 및 2020년 대학인권센터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모든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 인권교육, 언론인 인권교육 등 공공기관, 사회 등 각 분야별 교육대상자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병행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에 인권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부록 2, 3 참조).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부터 원격교육 방식을 도입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문화된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현재 인권교육원 설립 등을 추진 중이다.</p> <p>교육부는 2018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청소년 인권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권교육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인권교육 관련 범교과 학습주제 교수·학습자료 개발, 다양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을 학교 자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권인식을 제고하였다. 2021년 현재,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협업하여 학생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 중이다.</p>	<p>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p>

<p>130.66.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이행 노력을 강화할 것 (팔레스타인)</p>	<p>수용</p>	<p><육아휴직, 출산휴가 활성화></p> <p>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인상하였다. ('17.7월 첫째 150만원, 둘째부터 200만원→'18.7월 모든 자녀 200만원→'19.1월 모든 자녀 250만원)</p> <p>※ '20년 육아휴직자 수 112,045명(남성 27,423명)</p> <p>이외에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운영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원을 강화하였다. ('18년 160만원→'19년 180만원→'20년 200만원) 2019년 10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였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 최초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였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육아휴직과 합하여 최대 1년→최대 2년)하였고 급여를 인상(하루 1시간분은 통상임금의 80%→100%)하여 지원을 강화하였다.</p> <p><직장보육시설 확충></p> <p>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육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있다.</p> <p><여성 대표성 제고></p> <p>공공부문에서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 ('18~'22년) 추진실적 점검을 반기별로 시행하고, 제도개선 등 목표달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기업 내 성별균형 제고를 위한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 인식개선, 연구조사 및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p> <p><가족친화 인증제 운영></p> <p>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심사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기업을 확대하고 있다.</p>	<p>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p>
---	-----------	--	------------------------

130.67.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 (불가리아)	수용	권고 130.17. 및 130.66. 참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130.68. 의사결정직에서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 (콜롬비아)	수용	권고 130.17. 및 130.66. 참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130.69.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고 정치,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수단)	수용	권고 130.17. 및 130.66., 132.113. 참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130.70. 의사결정직에서 성비균형을 이루도록 장려하고, 노동시장 및 기업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를 통해 평등을 보장하는 등 성평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니카라과)	수용	권고 130.17. 및 130.66. 참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130.71.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차별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 (중국)	수용	권고 130.30. 참고	여성가족부
130.72.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기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외국인 여성이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러시아)	수용	정부는 2013년부터 지침을 개정하여 성폭력, 인신매매 등 피해자에 대하여 관련 수사나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였다. 내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지원 규정을 포함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포 '21.4.20, 시행 '23.1.1) 제정에 따라, 법률 시행 시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등 사법절차적 배려가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p>130.73. 아동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과정에 아동권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할 것 (카타르)</p>	<p>수용</p>	<p>보건복지부는 매년 법정 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5년~) 및 공공부문 예방교육('19년~) 시행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시행 중이며, 부모 대상 교육 영상 제작·배포를 통해 아동의 권리 존중 및 올바른 훈육 방법 확산을 추진 중이다.</p> <p>교육부는 2018년 학생(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안 관련 정책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9년에는 인성교육과 연계한 초등학생 대상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였다. 2020년에는 학생권리보장 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이 학교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회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p>	<p>보건복지부 교육부</p>
<p>130.74. 아동, 특히 장애아동을 위한 적절한 시설 및 지원이 제공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동티모르)</p>	<p>수용</p>	<p>2019년 1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신설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1년 1월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여 센터 확충을 위하여 노력 중이다.</p> <p>* '21.4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493개소</p> <p>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개정(시행 '22.1월)을 통하여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의 지원인원 및 돌봄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다.**</p> <p>* (지원인원/연간 돌봄시간) '21년 4,005명 / 720시간 → '22년 8,005명 / 840시간</p> <p>** 종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한해서만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하였으나, '22년부터는 자부담 설계를 통해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서비스 제공 가능</p>	<p>보건복지부</p>
<p>130.75. 고아원,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아동의 체벌을 법적, 실질적으로 금지할 것 (에콰도르)</p>	<p>수용</p>	<p>「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친권자가 자녀에 대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상 징계권 조항(제915조)이 2021년 1월 26일 삭제되었다.</p>	<p>보건복지부</p>

<p>130.76. 특히 성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제도적,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것 (알제리)</p>	<p>수용</p>	<p>2019년 8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시행하였다. 2020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강간 등 중대 성범죄의 예비·음모 처벌,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법정형 상향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시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20.5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상향(‘20.6월) 및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21.3월),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도입(‘21.3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다.</p>	<p>여성가족부 법무부</p>
<p>130.77. 장애인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리비아)</p>	<p>수용</p>	<p>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사업 등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 사업,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지원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p>	<p>보건복지부</p>
<p>130.78. 모든 장애인들이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불가리아)</p>	<p>수용</p>	<p>권고 130.61. 및 130.74., 130.77. 참고</p>	<p>보건복지부</p>
<p>130.79. 독립 감시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정신보건 시설 등에 수용된 장애인들을 폭력, 학대,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할 것 (에콰도르)</p>	<p>수용</p>	<p>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방문조사,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의 권리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예방, 학대피해 장애인의 사후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7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였고, 현재 중앙 및 시도 권익옹호기관 19개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차별, 인권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인권교육(‘21.1월~‘23.12월)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p>	<p>보건복지부</p>

<p>130.80. 강제치료를 금지하고, 폭력, 학대, 부당한 처우로부터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을 보호할 것 (동티모르)</p>	<p>수용</p>	<p>「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특수치료 제한, 가혹행위 등 금지 관련 내용을 이미 명시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때,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권리 존중 및 사생활 보호 관련 내용을 평가(인증) 기준에 포함하여 실시 중이다.</p> <p>* '18~'20년 정신의료기관 355개소 평가·인증 완료</p>	<p>보건복지부</p>
<p>130.81.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및 차별을 금지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내법과 제도를 강화할 것 (인도네시아)</p>	<p>수용</p>	<p>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폭력방지 및 근로조건 보호 등 권익보호를 위해 매년 약 3천여 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처분 및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다.</p> <p>2021년 4월,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노무관리, 산업재해예방, 보건관리, 인권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취업교육 시 노동관계법령·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외국인근로자가 언어소통의 문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0개소), 외국인력상담센터(콜센터)를 통해 통역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p> <p>또한 공무원·학생·교원·방송종사자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한국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21.2월), 제1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21.5월),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전담기관 지정('21.11월) 등 문화다양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p>	<p>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p>
<p>130.82. 이주노동자를 위한 효과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를 해결할 것 (중국)</p>	<p>수용</p>	<p>권고 130.81. 참고</p>	<p>고용노동부</p>

130.83.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프랑스)	수용	권고 130.81. 참고	고용노동부
130.84.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며, 노동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을 위반한 고용주를 처벌할 것 (태국)	수용	권고 130.81. 참고	고용노동부
130.85. 대한민국 국민과 이주민 사이에 문화교류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라오스)	수용	이주민을 포함한 소수문화 주체와 지역민 간 상호문화교류 지원(‘무지개다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경남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MAMF,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지원,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월 21일)로부터 일주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문화다양성법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으로 지정하여 대국민 홍보·캠페인 추진 등 국민과 이주민 간 상호문화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131.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시에라 리온, 과테말라, 온두라스, 키르키즈스탄)	참조	동 협약 상의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 보호 및 촉진 조치 의무(제44조), 취업을 위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할 당사국의 의무(제52조제4항), 모든 이주노동자 자녀의 출생등록 및 국적부여(제29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정규화 조치 노력(제69조제1항) 등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고 있으며, 동 협약의 비준 여부는 「출입국관리법」 등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131.2. 유네스코 교육에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것 (콩고)	참조	헌법 제 31조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교육차별철폐를 달성하였고 차별철폐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육차별철폐 협약의 비준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131.3. 전 정권 당시 납치된 북한 여종업원 12명과 복송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힌 김련희를 즉각 석방하고, 납치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사법처리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참조	정부의 입장은 2018년 밝힌 바와 같다.	국가정보원
132.1. 유엔 강제실종협약에 가입할 것 (이라크)	수용	201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엔 강제실종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 장관이 수용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20-'22년)으로 5번째 선출될 당시 자발적 공약으로 동 협약 비준을 약속하였다. 관련하여 법무부는 강제실종협약 이행입법위원회 운영지침(법무부훈령, 2020.9.11.제정)에 따라 전문가·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회의체인 '이행입법위원회'를 출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조약비준안과 이행입법안 마련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법무부
132.2. 유엔 강제실종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튀니지)	수용	권고 132.1. 참고	법무부
132.3. 유엔 강제실종협약을 비준할 것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스위스, 몬테네그로, 카자흐스탄, 시에라리온)	수용	권고 132.1. 참고	법무부
132.4.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코스타리카, 앙골라, 스웨덴, 독일)	참조	정부는 국가가 인간의 천부적 존엄 및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취지에 공감하며,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모든 사형수에 대한 감형조치 및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부
132.5.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할 것 (몽골)	참조	권고 132.4. 참고	법무부
132.6.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를 가속화할 것 (토고)	참조	권고 132.4. 참고	법무부

132.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베넌)	참조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관련 국내 이행 시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법령 제·개정 필요성, 비준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계속 중이다.	법무부
132.8. 국가 차원의 고문 방지 메커니즘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칠레)	참조	권고 132.9. 참고	법무부
132.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 (가나)	수용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고문방지소위원회(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에 부여한 권한은 군사 기밀보호, 각종 직무상 기밀누설 금지 등 관련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즉시 비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에 따라 수립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구금된 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거나 직권으로 군 교도소, 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구금시설을 방문조사하고, 진정조사 시 입회인 없이 수용자를 면담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서 정부기관 등에 정책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는 등,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규정한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on Mechanisms)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내 구금시설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의도한 바와 같이 독립적 기구로부터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감시를 받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 선택의정서의 비준과 관련하여 검토를 계속 중이다.	법무부
132.10.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고려할 것 (튀니지)	수용	권고 132.9. 참고	법무부
132.11.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카자흐스탄, 터키, 덴마크, 과테말라, 포르투갈, 우루과이)	참조	권고 132.9. 참고	법무부

132.1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토고, 과테말라, 가나)	참조	<p>* 정부는 기존의 '참조' 입장과 달리 해당 권고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변경하였다.</p> <p>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안은 2021년 12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송부되었다. 동 가입안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UN에 통보될 예정이며 도달 후 30일에 선택의정서의 국내 효력이 발생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e호(장애인 보험 비차별조항)에 대한 유보철회안은 2021년 12월 14일 국무회의 통과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같은 해 12년 23일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통보됨으로써 유보가 철회되었다.</p>	보건복지부
132.13. 이주노동자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인도네시아, 세네갈, 필리핀)	참조	권고 131.1. 참고	법무부
132.14. 이주노동자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페루, 수단)	참조	권고 131.1. 참고	법무부
132.15. 이주노동자협약 가입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벨라루스)	참조	권고 131.1. 참고	법무부
132.16.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것 (아르메니아)	참조	2002년 11월 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 등에 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제29조)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권고내용 상의 협약 가입 실익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132.17. 침략범죄에 대한 로마규정 캄팔라 개정문을 비준할 것 (리히텐슈타인)	참조	정부의 입장은 2018년 밝힌 바와 같다.	외교부
132.18.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할 것 (과테말라)	참조	<p>정부는 2018년 밝힌 바와 같이 현 상황에서 핵무기금지조약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p> <p>다만,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국제사회 공동목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핵비확산조약(NPT)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를 지지해왔으며, 이외에도 「핵군축 환경조성(CEND)」, 「핵군축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등 국제 핵군축 진전을 위한 주요국 간 노력에 적극 참여 중이다. 이 밖에, 2019년 및 2021년 유엔총회에서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 채택을 주도하는 등 미래 세대 관여를 통한 핵군축 논의 진전 노력도 적극 전개 중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반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p>	외교부

<p>132.19.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 및 의정서의 비준을 위한 개혁 및 입법 조치를 취할 것 (코트디부아르)</p>	<p>수용</p>	<p>정부는 그간 참여하지 않았던 국제인권협약에 조속히 가입 및 비준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현재 비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관련 내용은 권고 132.12.와 132.21.을 참고할 수 있다. 또 정부는 ILO 핵심협약 3개(제29호, 제87호, 제98호)를 비준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권고 130.1.과 132.20.을 참고할 수 있다. 강제실종협약은 현재 협약 가입과 국내 이행입법을 함께 추진 중이고 관련 내용은 권고 132.1.을 참고할 수 있다.</p>	<p>법무부 외교부</p>
<p>132.20. 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고려할 것 (알바니아)</p>	<p>수용</p>	<p>정부는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2020년 12월 UN 자유권 규약 제22조 및 ILO 핵심협약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단결권 보장을 위한 3개 노동관계법 개정을 완료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법: 기업별 노조까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 * 공무원노조법: 노조 가입의 직급제한 폐지,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등 * 교원노조법: 퇴직 교원의 노조가입 허용 등 <p>이에 따라 2021년 2월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강제노동금지 관련 제29호)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2021년 4월 20일 ILO와 화상으로 협약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하고 관련 비준절차를 완료하였다.</p> <p>위와 같이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및 제98호)이 비준됨에 따라, 기존 자유권규약 제22조의 적용 유보를 철회할 필요가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동 유보사항 철회를 긍정 검토할 예정이다.</p>	<p>고용노동부 법무부</p>

<p>132.21.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에 관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 (이란)</p>	<p>수용</p>	<p>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면서 비준 이후 현재까지 UN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석을 통해 국내외 협약 이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또한, 2016년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국내이행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13개 국가기관 합동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하였다. 특히, 2021년까지 매년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연차별 모니터링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장애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널리 알리고 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조력이사결정으로의 전환을 권고한 바 있는데, 정부는 정신지체장애인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의 의사결정지원이 중점이 되도록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충실한 의사결정지원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p>	<p>보건복지부</p>
<p>132.22. 유엔 협약기구 선거를 위한 국가 후보자 인선 절차를 개방적이고 자격구비에 따른 선정 방식(merit-based)에 따라 진행할 것 (영국)</p>	<p>수용</p>	<p>정부는 국제인권법 및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후보자 그룹을 관리해 왔으며, UN 협약기구 공석 시 동 후보자 그룹 가운데 해당 국제 인권 분야 전문가들의 추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학계, 시민단체 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자 그룹을 지속 관리하고, UN 협약기구 선거를 위한 후보자 인선 절차 추진 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추천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p>	<p>외교부</p>
<p>132.23.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국가 차원의 고문방지기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고문방지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 (몰도바)</p>	<p>수용</p>	<p>권고 132.9. 참고</p>	<p>법무부</p>
<p>132.24. 새로운 정당의 창당절차를 간소화할 것 (이라크)</p>	<p>참조</p>	<p>정당 등록 절차 간소화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의 등록요건은 정당의 개념표지(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다.</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p>

132.25. 「국가보안법」 등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반인권적인 법과 문제적인 「북한인권법」을 폐지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참조	정부의 입장은 2018년 밝힌 바와 같다.	법무부
132.26.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모든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온두라스)	참조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8~'22년)의 정책과제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0월 현재 네 개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정부는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
132.27. 인종, 성,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을 포함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체 없이 도입할 것 (슬로베니아)	참조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28. 인종, 성, 국적 등을 포함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립할 것 (방글라데시)	수용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29. 모든 차별 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스페인)	수용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30. 폭력과 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혐오를 근절하며 모든 종류의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의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이집트)	수용	권고 130.25. 참고	법무부
132.3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 (조지아)	수용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32.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인종,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완전한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알바니아)	참조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33.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도입을 승인하고,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며, 혐오발언,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등 편견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표현과 의사표명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니카라과)	수용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34.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하며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터키)	수용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3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법 위반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하는 조치를 포함할 것 (팔레스타인)	참조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36. 인종,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을 도입하고,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외국인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콜롬비아)	참조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37. 인종, 성, HIV/AIDS 감염 여부 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보츠와나)	수용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38.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호주)	참조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39. 성소수자, 소외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노르웨이)	참조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40. 성적지향, 성, 종교, 신념,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덴마크)	참조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41. 이주민, 소수인종 및 소수종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것 (멕시코)	수용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42.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우간다)	수용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43. 차별금지법의 이행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칭찬할 만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특히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사유에 근거한 불관용과 불평등을 근절할 것 (브라질)	참조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44. 성정체성,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폐지할 것 (프랑스)	참조	<포괄적 차별금지법> 권고 132.26. 참고 <군형법 제92조의6> 군형법 제92조의6와 관련하여 처벌과 위헌성에 대해 2002, 2011, 2016년 세 차례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 4건(2017년 3건, 2020년 1건)이 진행 중인 바, 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다.	법무부 국방부
132.45.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하기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제한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아일랜드)	참조	권고 132.44. 참고	법무부 국방부
132.4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근절 노력을 지속할 것 (세네갈)	수용	권고 130.25. 참고	법무부
132.47.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그 밖의 관련된 불관용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할 것 (르완다)	수용	권고 130.25. 참고	법무부

132.48.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선언할 것 (나미비아)	참조	인종차별에 기인한 폭력·명예훼손·모욕 행위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고, 처벌 정도에 있어서 인종차별은 법관이 존중하여야 하는 양형의 조건 중 '범행의 동기'로 고려된다. 인종차별에 기인한 혐오범죄, 혐오표현의 형사법적 규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132.49.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외국인혐오 발언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메커니즘 강화를 지속할 것 (베네수엘라)	수용	<p><외국인혐오 방지 및 인종 차별> 권고 130.25. 참고</p> <p><다문화가정> 정부는 향후 다문화가족이 국적·민족·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p> <p><차별금지 메커니즘> 권고 132.26. 참고</p>	여성가족부 법무부
132.50. 비시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 외국인 혐오 발언을 예방하고 대항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 (카자흐스탄)	수용	권고 130.25. 참고	법무부
132.51.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외국인혐오 발언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터키)	수용	권고 130.25. 참고	법무부
132.52. 외국인 관련 법제와 연계한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통해 인종차별, 외국인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것 (리비아)	수용	권고 130.25. 참고	법무부

<p>132.53. 언론 및 인터넷에서 인종 및 종족에 대한 불관용을 선동하고 이를 출판, 게시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 (러시아)</p>	<p>수용</p>	<p>○ 방송심의의결 내역(2017.11.~2021.5.)</p> <table border="1" data-bbox="936 210 1899 328"> <thead> <tr> <th>구분</th> <th>2017</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계(단위: 건)</th> </tr> </thead> <tbody> <tr> <td>의결내역</td> <td>0</td> <td>3 (권고1, 의견제시2)</td> <td>7 (권고4, 의견제시3)</td> <td>2 (권고1, 의견제시1)</td> <td>0</td> <td>12</td> </tr> </tbody> </table> <p>*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위반</p> <p>○ 방송심의책임자 회의 개최실적(2017.11.~2021.5.)</p> <table border="1" data-bbox="936 446 1899 513"> <thead> <tr> <th>구분</th> <th>2017</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계(단위: 회)</th> </tr> </thead> <tbody> <tr> <td>개최실적</td> <td>25</td> <td>44</td> <td>40</td> <td>42</td> <td>1</td> <td>152</td> </tr> </tbody> </table> <p>○ 통신심의 차별·비하 정보 시정요구 내역(2017.11.~2021.5.)</p> <table border="1" data-bbox="936 593 1899 711"> <thead> <tr> <th>구분</th> <th>2017</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계(단위: 건)</th> </tr> </thead> <tbody> <tr> <td>심의건수</td> <td>1,356</td> <td>2,638</td> <td>1,886</td> <td>1,580</td> <td>80</td> <td>7,540</td> </tr> <tr> <td>시정요구 (삭제, 접속차단)</td> <td>1,166</td> <td>2,352</td> <td>1,406</td> <td>473</td> <td>43</td> <td>5,440</td> </tr> </tbody> </table> <p>* 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3호 바목(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위반</p>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단위: 건)	의결내역	0	3 (권고1, 의견제시2)	7 (권고4, 의견제시3)	2 (권고1, 의견제시1)	0	12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단위: 회)	개최실적	25	44	40	42	1	152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단위: 건)	심의건수	1,356	2,638	1,886	1,580	80	7,540	시정요구 (삭제, 접속차단)	1,166	2,352	1,406	473	43	5,440	<p>방송통신위원회</p>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단위: 건)																																														
의결내역	0	3 (권고1, 의견제시2)	7 (권고4, 의견제시3)	2 (권고1, 의견제시1)	0	12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단위: 회)																																														
개최실적	25	44	40	42	1	152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단위: 건)																																														
심의건수	1,356	2,638	1,886	1,580	80	7,540																																														
시정요구 (삭제, 접속차단)	1,166	2,352	1,406	473	43	5,440																																														
<p>132.54. 외국인혐오, 혐오발언 및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 (키르기스스탄)</p>	<p>수용</p>	<p><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권고 132.49. 참고 <차별금지에 관한 조치> 권고 132.26. 참고</p>	<p>여성가족부 법무부</p>																																																	
<p>132.55.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혐오발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할 것 (시에라리온)</p>	<p>수용</p>	<p>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 과제로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강화',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를 포함하여 시행 중이다. 관련 내용은 권고 132.53.을 참고할 수 있다.</p>	<p>법무부</p>																																																	
<p>132.56.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 (키르기스스탄)</p>	<p>참조</p>	<p>권고 132.48. 참고</p>	<p>법무부</p>																																																	
<p>132.57. 2012년 UPR 권고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혐오발언 및 폭력행위로 나타나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 (아르헨티나)</p>	<p>참조</p>	<p>권고 132.26. 참고</p>	<p>법무부</p>																																																	

132.58. 군대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성 또는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영국)	참조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59. 적절한 입법을 통해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이스라엘)	참조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60.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삽입할 것 (스웨덴)	참조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61.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또는 모든 형태의 낙인찍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칠레)	참조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62.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국가 차원의 인식 제고 캠페인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이탈리아)	참조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63.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소속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에서 “전환치료”로 알려진 여러 치료적 행위를 금지할 것 (우루과이)	참조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전환치료’와 이와 관련된 공적 영역의 행사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정부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 강화 노력의 하나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네 개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향후 논의에 협조할 것이다.	법무부
132.64.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미국)	참조	권고 132.26. 참고	법무부
132.65.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할 것(캐나다)	참조	<포괄적 차별금지법> 권고 132.26. 참고 <군형법 제92조의6> 권고 132.44 참고	법무부 국방부

132.66. 군대 내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 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코스타리카)	참조	권고 132.44 참고	국방부
132.67. 군대 내 동성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 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 (네덜란드)	참조	권고 132.44 참고	국방부
132.68.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덴마크)	참조	권고 132.44 참고	국방부
132.69. 개발 정책 및 사업에 있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사회의 효과적 참여를 보장하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할 것 (예멘)	수용	정부는 우리 개발협력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에 ODA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 시 젠더 및 인권에 대해 고려토록 명시하였다. 한편, KOICA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하고자,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0~'23년)을 수립, 사업 기획-실행-평가단계에서 인권기반접근(HRBA)에 기초한 사업 수행에 요청되는 15대 정책과제를 이행 중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효과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 인권위험의 예방 및 적절 관리를 위해 사업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수행 기업 대상 인권교육 지원, 인권영향평가 워크숍 운영, 인권경영 실천 가이드라인 등을 보급 중이다.	외교부
132.70. 사형제를 폐지할 것 (온두라스)	참조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19.10. '21.10. 이상민 의원 발의)」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였다.	법무부
132.71. 사형제를 법적 폐지를 추진할 것 (노르웨이)	참조	권고 132.70. 참고	법무부
132.72. 사형제 폐지 추진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참조	권고 132.70. 참고	법무부
132.73. 사형제의 법적 폐지를 고려할 것 (동티모르)	참조	권고 132.70. 참고	법무부
132.74. 사형제의 법적 폐지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우즈베키스탄)	참조	권고 132.70. 참고	법무부

132.75. 사형제의 법적 폐지와, 모든 사형수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감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 (리히텐슈타인)	참조	권고 132.70. 참고	법무부
132.76. 사형제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 선언과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을 것 (르완다)	참조	정부는 2020년 11월 17일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 표결하였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위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동 결의안 찬성 표결은 우리 정부가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만,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부
132.77. 20년 동안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을 취했던 것에서 진전하여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 (캐나다)	참조	권고 132.70. 참고	법무부
132.78. 사형제를 폐지하고, 현재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를 징역형으로 감형 조치할 것 (콜롬비아)	참조	권고 132.70. 참고	법무부
132.79. 사형제를 폐지하고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의 형을 징역형으로 감형할 것 (파나마)	참조	권고 132.70. 참고	법무부
132.80. 모든 사형수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것 (슬로베니아)	참조	<사형제 폐지 관련 법 개정 현황> 권고 132.70. 참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권고 132.4. 참고	법무부
132.81. 모든 사형수에 대하여 감형조치하고, 사형제를 폐지할 것 (스위스)	참조	권고 132.70. 참고	법무부

132.82. 기존 모라토리엄 입장을 인정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것 (멕시코)	참조	권고 132.80. 참고	법무부
132.83. 사형제를 법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포르투갈)	참조	권고 132.80. 참고	법무부
132.84. 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호주)	참조	권고 132.80. 참고	법무부
132.85.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사형제가 범죄억제 효과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제고 노력을 펼칠 것 (프랑스)	참조	권고 132.70. 참고	법무부
132.86. 사형제를 금지하는 법적 이니셔티브를 승인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페인)	참조	권고 132.80. 참고	법무부
132.87. 모든 사형수에 대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할 것 (몬테네그로)	참조	권고 132.80. 참고	법무부
132.88. 사형제를 법으로 폐지하고, 관련 의정서를 비준할 것 (나미비아)	참조	권고 132.80. 참고	법무부
132.89. 사형 적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정 명령을 발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것 (아일랜드)	참조	권고 132.76. 및 132.80. 참고	법무부
132.90.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정치범과 통일지지 인사들을 석방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참조	정부의 입장은 2018년 밝힌 바와 같다.	법무부
132.91. 고문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 (잠비아)	참조	제20, 21대 국회에 발의된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는 내용의 「형법(’16.2., ’20.7. 각 인재근 의원 발의)」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였다.	법무부

132.92. 부부간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것 (파나마)	참조	현행 「형법(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처벌법(제3조~제15조)」 및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부부간 성폭력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
132.93. 미군이 저지른 인권범죄에 대한 불처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참조	주한미군의 군사재판권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를 따르며, 군사법원은 주한미군에 관한 군사재판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국방부
132.94.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범죄화하고, 완전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모든 이들을 석방할 것 (독일)	참조	<p>* 정부는 기존의 '참조' 입장과 달리 해당 권고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변경하였다.</p> <p>2018년 6월 28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병역종류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정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였다.</p> <p>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국방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을 2019년 12월 제정하였다. 2020년 6월에 하위법령 제정과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2020년 10월부터 대체역이 소집되어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다.</p>	국방부 병무청
132.95.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현역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완전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할 것 (캐나다)	참조	권고 132.94. 참고	국방부 병무청
132.96.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 (미국)	참조	권고 132.94. 참고	국방부 병무청
132.97. 현역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이행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적절한 비처벌적 대체 복무를 도입할 것 (호주)	참조	권고 132.94. 참고	국방부 병무청

132.9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의 원인과 충돌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비전 투적 또는 민간 성격을 띠고, 공익에 부합하며, 비차별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것 (크로아티아)	참조	권고 132.94. 참고	국방부 병무청
132.99.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민간 성격을 띠며 민간 통제를 받는 비차별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의무적 군사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된 개인들의 상황을 검토하여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것 (프랑스)	참조	권고 132.94. 참고	국방부 병무청
132.100.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 (멕시코)	참조	권고 132.94. 참고	국방부 병무청
132.10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의무에 부합하며 민간 통제 하에 운영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 (스위스)	참조	권고 132.94. 참고	국방부 병무청
132.102. 의무복무제도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바꾸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아르헨티나)	참조	권고 132.94. 참고	국방부 병무청
132.103.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징역형을 폐지하며,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모든 이들을 석방할 것 (파나마)	참조	권고 132.94. 참고	국방부 병무청
132.104.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법으로 인정하도록 보장할 것 (포르투갈)	참조	권고 132.94. 참고	국방부 병무청

132.105. 양심적 병역거부만을 이유로 수감 또는 구금된 개인들을 석방하고, 이들의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것 (크로아티아)	참조	권고 132.94. 참고	국방부 병무청
132.106. 수감 또는 구금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하는 것을 고려하고, 이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없애는 것을 고려할 것 (코스타리카)	수용	권고 132.94. 참고	국방부 병무청
132.107. 명예훼손죄는 민사처벌만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보상액은 발생한 피해에 비례하여 책정되도록 할 것 (과테말라)	참조	2021년 2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정부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다.	법무부
132.108. 형사상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을 민법으로 대체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확장할 것 (미국)	참조	<명예훼손죄> 권고 132.107. 참고 <국가보안법> 정부의 입장은 2018년 밝힌 바와 같다.	법무부
132.109. 「국가보안법」 제7조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 법이 표현, 의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기소당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개인들을 석방할 것 (독일)	참조	정부의 입장은 2018년 밝힌 바와 같다.	법무부
132.110.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검토할 것 (이라크)	참조	정부의 입장은 2018년 밝힌 바와 같다.	법무부
132.111. 「국가보안법」을 검토하여 언론, 결사, 평화로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할 것 (포르투갈)	참조	정부의 입장은 2018년 밝힌 바와 같다.	법무부
132.112.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보장할 것 (벨라루스)	수용	권고 130.44. 및 130.46., 130.47. 참고	여성가족부

132.113. 국회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 할당제를 수립할 것 (인도)	수용	<p>국회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그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 후보자의 추천 비율에 따라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p> <p>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2018년 4월 6일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2.114. 임신중절수술을 비범죄화하는 등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존중할 것 (코스타리카)	참조	<p>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무부는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2020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p> <p>더불어 지난 2021년 5월 여성가족부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포럼을 개최하여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p>	여성가족부 법무부
132.115. 낙태시술을 받은 여성, 시술한 의사 및 의료진을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네덜란드)	참조	<p>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무부는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2020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p>	법무부
132.116.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 불임수술 사례에 대하여 조사할 것 (러시아)	참조	<p>정부는 가임기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사례를 전수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개별 사례 발견시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고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p>	보건복지부
132.117.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 불임수술 관행을 조속히 철폐할 것 (알바니아)	참조	<p>1999년 2월 8일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강제불임화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다. 개별 사례 발견시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고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p>	보건복지부
132.118. 난민과 비호신청자의 자녀들을 포함하는 보편적 출생제도를 수립할 것 (이란)	참조	<p>* 정부는 기존의 '참조' 입장과 달리 해당 권고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변경하였다.</p> <p>정부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추진 중이다.</p>	법무부

132.119. 부모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출생신고제도를 수립할 것 (키르기스스탄)	참조	권고 132.118. 참고	법무부
132.120. 난민, 비호신청자, 무국적자의 자녀를 포함하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를 도입할 것 (페루)	참조	권고 132.118. 참고	법무부
132.121.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보편적 출생신고제도에 포함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할 것 (터키)	참조	권고 132.118. 참고	법무부
132.122. 부모의 국적 및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출생신고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것 (카자흐스탄)	수용	권고 132.118. 참고	법무부
132.123. 외국인을 위한 포괄적 국가출생신고제도를 구축하여 이들의 자녀들의 출생사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에라리온)	참조	권고 132.118. 참고	법무부
132.124.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국가출생신고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보츠나와)	참조	권고 132.118. 참고	법무부
132.12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을 비준하여 이주노동자들이 모든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할 것 (이집트)	참조	권고 131.1. 참고	법무부
132.126.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이 충분한 생활비, 주거, 의료서비스, 교육에 대한 접근을 갖도록 보장할 것 (콩고)	참조	권고 132.129. 참고	보건복지부

<p>132.127. 이주노동자, 특히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이들의 한국 사회 통합을 도울 것 (베트남)</p>	<p>수용</p>	<p>고용허가제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법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중이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폭력방지 및 근로조건 보호 등 권익보호를 위해 매년 약 3천여 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처분 및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다.</p> <p>*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한 퇴직금지, 출산 시 산전후 휴가보장,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 점검</p> <p>2021년 4월에는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취업 교육 시 노동관계법령·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하여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조치하였다.</p> <p>고용허가제 여성 외국인근로자가 언어소통의 문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0개소), 외국인력상담센터(콜센터)를 통해 통역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p>	<p>고용노동부</p>
---	-----------	--	--------------

<p>132.128. 「고용허가제법」을 개정하여 사업장 변경 기록이 있는 이주노동자의 비자 연장 또는 갱신이 제한을 받거나 거부당하지 않도록 할 것 (방글라데시)</p>	<p>수용</p>	<p>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은 무분별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내국인 근로자와 일자리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라는 고용허가제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외국(대만, 싱가포르 등)의 경우에도 자국의 노동시장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자국 내 취업활동(사업장 변경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사업장 변경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21.12월)하는 등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와도 부합되게 운영 중이다.</p> <p>다만, 사업장 이동제한이 인권침해와 이어지지 않도록 8차례에 걸쳐 사업장 변경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횡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p> <p>*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의 제한,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 등 또한, 2021년 4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하여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에 대해 사업장 변경을 확대하였다.</p> <p>*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등 추가, 농지법·건축법 등에 위반되는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농한기·금어기 등 사유로 권고퇴사, 가입의무가 있는 사회보험 등 미가입</p>	<p>고용노동부</p>
--	-----------	---	--------------

<p>132.129.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에게 적절한 생계수단, 주거, 의료, 교육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란)</p>	<p>수용</p>	<p>「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p> <p>※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로 대체 가능</p> <p>학력증빙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의 경우,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심의를 통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p> <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 제98조의3</p> <p>‘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배우자와 자녀 등)의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다.</p>	<p>보건복지부 교육부</p>
<p>132.130. 학교에 등록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출국 및 강제출국 명령 이후 구금을 전면 중단할 것 (방글라데시)</p>	<p>참조</p>	<p>정부는 취학 중인 불법체류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마칠 때까지 단속을 자제하고,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하고 있다. 또한,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명령 처분 자체를 하지 않는 등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p>	<p>법무부</p>

[부 록]

1. <각 선출·지명기관별 인권위원 공석 시 공고 현황> (권고번호 130.10.)

공고일	선출·지명권자
2016. 10. 17.	대법원장
2017. 03. 27.	대법원장
2017. 08. 01.	대통령
2017. 11. 03.	국회
2017. 12. 20.	국회
2018. 06. 18.	대통령
2018. 12. 19.	국회
2019. 05. 10.	대통령
2019. 07. 02.	국회
2019. 10. 21.	대통령
2019. 11. 06.	대법원장
2020. 02. 19.	대통령
2020. 03. 20.	국회
2020. 12. 15.	대법원장
2021. 03. 12.	국회
2021. 05. 28.	대법원장
2021. 05. 28.	국회
2021. 06. 04.	대통령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 <인권교육 관련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실시 현황> (권고번호 130.65.)

연도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사업명
2017	2017년도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개선 방안 연구
2018	국가·지자체 공무원 인권교육 모니터링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2019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현황 모니터링
2020	행정분야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대학인권센터 운영현황 실태조사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
2021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광역지자체 인권교육 실태조사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실태조사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3. <인권교육 실시 현황> (권고번호 130.65.)

(단위 : 회, 명)

구 분		합 계	교육과정	방문 프로그램	인권특강	사이버교육	콘텐츠공동 활용교육
합 계	횟수	16,408	1,054	1,406	6,176	4,053	3,719
	인원	1,234,826	43,548	25,395	268,372	690,891	206,620
2021. 1.~5.	횟수	748	65	114	300	269	-
	인원	41,361	1,234	1,630	8,051	30,446	-
2020	횟수	3,443	150	163	733	1,131	1,266
	인원	362,459	5,011	2,700	29,846	220,392	104,510
2019	횟수	6,282	330	556	2,699	1,363	1,334
	인원	445,807	12,527	10,694	107,372	261,505	53,709
2018	횟수	5,189	427	484	2,116	1,133	1,029
	인원	343,627	19,957	8,542	106,189	165,248	43,691
2017.11. ~12.	횟수	746	82	89	328	157	90
	인원	41,572	4,819	1,829	16,914	13,300	4,710

(출처: 국가인권위원회)